

제3장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1절 주민생활지원행정

제2절 복지서비스행정

제3절 청소행정

제4절 환경·위생행정

제5절 지역경제행정



제3장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1절 주민생활지원행정

1.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현재 지역사회 내에서 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 담당부서 및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그리고 보건소와 같은 공적전달 체계 외에도 사회복지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자원봉사센터, 노동사무소 등 다양한 기관·단체들을 통해 보건과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공공·민간분야 상호간의 연계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각 기관·단체가 수요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일부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의 중복·누락이 발생하고 있으며, 복지대상자가 보건·복지 등의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을 수차례 방문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해 민간 참여를 보장하는 시스템도 미비되어 있어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 구조를 통해 지역사회내 보건·복지분야 등 민·관 대표자 및 실무자들의 참여에 의한 수요자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연계·협력체계의 구축 마련이 요구되었다.

2003년 7월 30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 대표자,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 대표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지역사회내 각 분야별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체 참여 기관들 간의 원활한 실무협의를 위해 실무협의체내 사업별, 대상인구별 실무분과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민간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관의 연계·협력을 위하여 임명직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으로 공동위원장을 구성하였다.

2005년 7월 31일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심의,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의 강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시민단체 등의 대표와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관계 공무원으로 사회복지협의체를 2005년 7월 31일 구성 완료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실무협의체를 복지위원 대표, 사회복지시설·시민단체의 실무자와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사회복지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 분과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나. 동 단위 복지위원 구성 및 운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 증대와 함께 「긴급복지지원법」 제정 추진과 관련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의 발굴 및 신고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동 단위 복지위원을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동장의 추천을 받아 각 동별 2명씩을 위촉하였다.(단, 망미1동은 3명, 수영구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인구 3만명이 넘는 동은 1명 추가 위촉)

복지위원은 가정폭력, 여성·아동·노인학대 및 알코올 중독, 심신질환, 가출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연계하여 지역사회복지증진에 협력하게 될 것이다.

다. 이웃돕기성금 모금 및 지원 현황

1975년부터 정부에서 주관하던 이웃돕기모금사업이 1998년 7월 1일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시행되어 동 사업이 민간단체로 이관되면서 같은 해 전국공동모금회와 16개 지역공동모금회가 설립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동법이 1999년 4월 1일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개정·시행되어 지원대상 사업의 적용 범위가 사회복지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 활동으로 확대되고 개별 독립법인이던 지역공동모금회가 공동모금회 지회로 전환되었다.

공동모금회의 모금사업은 연말연시 집중모금과 연중모금으로 구분되는데 2011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희망 나눔 2012 이웃사랑캠페인”을 전개하여 총 1억8천9백만원을 모금하였다.

연도별 이웃돕기성금 모금액

[단위 : 건수, 천원]

년 도	구 분	계	성 금	성 품
희망 2011 이웃돕기캠페인	건 수	781	751	30
	금 액	191,960	132,243	59,717
희망 2012. 이웃돕기캠페인	건 수	967	937	30
	금 액	189,101	130,452	58,649

지역사회 민간복지 재원을 확충하고 “나눔과 참여”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하고 활발한 모금과 배분사업을 실시하여 2011년도 저소득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등에 대한 지원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2011년 이웃돕기성금 지원현황

[단위 : 건수, 천원]

구 분	계	생 계 비	복지시설	기 타
건 수	211	53	20	138
금 액	437,835	121,335	48,077	268,423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가. 수급자 선정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2012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원)

가 구 규 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12(원/월)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2011(원/월)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119,607
2010(원/월)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2,069,626

※ 8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 때마다 276,677원씩 증가(8인 가구 2,602,257원)

2011년도 수급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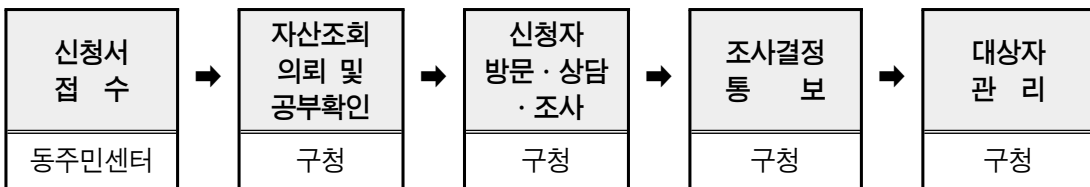
[2011. 12. 31 기준]

동 별	계		일 반 수 급 자		특례 수 급 자		시 설 수 급 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시설(개소)	인원(명)
계	3,184	5,221	3,112	4,965	72	149	8	107
남 천 1 동	184	286	184	286				
남 천 2 동	74	129	74	129				
수 영 동	452	664	444	654	8	10		
망 미 1 동	578	961	561	903	17	40	4	18
망 미 2 동	268	463	263	452	5	11		
광 안 1 동	367	666	349	572	18	41	2	53
광 안 2 동	271	432	271	432				
광 안 3 동	280	488	272	475	8	13		
광 안 4 동	290	508	284	461	6	12	1	35
민 락 동	420	624	410	601	10	22	1	1

나. 복지대상자 신청

- 수급자 신청은 관할 동주민센터에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 급여신청 주체 :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 － 접수時 구비서류 : 보장·급여신청서, 주거확인 서류,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급여통장 계좌번호 사본, 소득확인서류, 진단서(장기 질병자 및 치료중인 자, 진단기간 명시) 등

○ 통합조사 절차



다. 수급자 지원사항

(1) 생계급여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소득인정액과 최저생계비의 차액에 따라 보충급여 형태로 지급

○ 지급일시 : 매월 20일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긴급생계급여 : 급여일시 여부 결정전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지급

2011년도 지원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월 평 균 보 장 인 원		해산비보장인원 (연 인 원)	장제비보장인원 (연 인 원)	지 원 금 액
	가 구	인 원			
계	2,957	4,812	8	96	11,821,236
일반수급자	2,949	4,708	8	91	11,641,937
시설수급자	8	104	0	5	179,299

(2) 주거급여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주거유형에 관계없이 가구원 수별 일정금액을 현금 지급하며, 자가가구 등은 30%를 현물급여 형태로 지급

○ 지급일시 : 매월20일(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2011년도 지원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월 평 균 보 장 인 원		지 원 금 액
	가 구	인 원	
일반수급자	2,806	4,584	2,700,758

(3)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빈곤의 세대 전승을 차단하고자 수급자 자녀 중 중학생, 고등학생 및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재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 지원현황과 2012년 지원계획은 다음의 표와 같다.

2011년 지원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총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인 원	748	729	19
지원금액	634,255	615,683	18,572

2012년 지원계획

지원항목	지 급 기 준	지급시기	지 급 대 상	비 고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전액	분기지급 2,5,8,11월	고등학생	
	· 자녀학용품비 · 1인/연2회24,000원씩(반기별)	1/4,3/4분기 지급	수급자 자녀중 중 · 고등학생	
	· 교과서대 1인/연 115,700원	학년초	(교과서대 : 고1~고3)	
	· 부교재비 1인/연1회 34,900원	학년초	(부교재비 : 중1~중3)	
자녀교육 장 려 금	· 1인/연4회 - 중학생 60,000원 - 고등학생 80,000원	분기지급 1,4,7,10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녀중 중 · 고교생	市특별 지 원 사업비

(4) 해산급여 : 출산여성에게 1인당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5) 장제급여 : 사망시에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지급

○ 근로능력유무와 관계없이 1가구당 50만원

※ 시(市) 특별지원사업으로 월동 대책비, 자녀 교육 장려금 등을 지급한다.

市 특별지원사업 현황

지 원 항 목	지 급 기 준	지급시기	지 급 대 상	비 고
월 동 대 책 비	· 수급자 연 1회 50,000	10월 20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市특별 지 원 사업비
	· 차상위계층 연 2회 100,000	10월 20일 12월 20일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0%이하	
교 육 장 려 금	· 1인/연 4회 중학생 60,000원 고등학생 80,000원	분기지급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녀중 중 · 고등학생	市특별 지 원 사업비

(6) 긴급생계급여

갑작스러운 주 소득자의 사망, 중환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 소득층에게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의 생계유지비를 지급하며, 필요시 3개월에 한하여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2012년 지원계획은 다음과 같다.

2012년 지원계획

[단위 : 명, 원]

지원항목		지 급 기 준	지급시기	지 급 대 상	비고
생 계 급 여	일 반 생계급여	·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보충급여 형태로 차액지급	매월20일 (공휴일인 경우 그전일지급)	· 수급자 전원 (의료, 교육, 자활특례자 등 제외)	
	긴 급 생계급여	· 1인 : 373,500 2인 : 646,000 3인 : 822,700 4인 : 1,009,500 5인 : 1,196,200 6인 : 1,383,000 7인 이상 : 1인 추가 시 186,800원 · 기간 : 1개월, 필요시 5월에 한하여 연장가능	신청시	· 주 소득원의 사망, 질병, 가 출, 구금시설수용 등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중 - 재산 135백만원이하 - 소득 최저생계비 이하 -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 중 신청가구 (주거지원 500만원 이하)	
장제 급여		· 1가구당/500,000	사망시 지 급	· 수급자중 사망자가 발생한 가구	
해산 급여		· 1인/1회 500,000	해산시 지 급	· 수급자중 해산자가 발생한 가구	
주거 급여		·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보충급여 형태로 차액지급	매월20일 (공휴일인 경우 그전일지급)	· 수급자 전원 (의료, 교육, 자활특례자 등 제외)	

3.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망 구축

가. 저소득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복지지원법이 2006. 3. 24 시행됨에 따라 우리과에서도 보다 많은 저소득 위기가정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실 전광판 및 새수영 등에 수시 게재하여 대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긴급지원 접수는 보건복지 콜센터(☎129) 및 구청, 동주민센터 등 어디든 접수 가능하며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선지원 후처리를 원칙으로 시행되고 있다.

긴급지원 전후 대상자에 대한 타지원 연계(보건소 중증암 치료비 지원, 이웃돕기성금 등)를 추진하여 주민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2011년 지원실적으로는 접수 162건에 지원결정 130건으로 총 165,493천원을 지원하였고, 이웃돕기성금 및 보건소 중증암 치료비 지원 등으로 65건을 타 지원 연계하여 지원하였다.

나. 장학금 지원

수영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고등학교 학생을 동장의 추천을 받아 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데 연도별 장학금 지급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장학금 지급액

[단위 : 명, 천원]

년 도	구 분	계	중 학 생	고등학생
2007년	지급인원	11	-	11
	지급금액	6,600	-	6,600
2008년	지급인원	13	-	13
	지급금액	7,800	-	7,800
2009년	지급인원	14	-	14
	지급금액	8,400	-	8,400
2010년	지급인원	12	-	12
	지급금액	7,200	-	7,200
2011년	지급인원	10	-	10
	지급금액	6,000	-	6,000

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1)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활·자립 의욕이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가구당 2,000만원이내에서 융자해 주고 있으며 2003년 8월 1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를 개정하여 연이율 3%, 2년 거치 36개월 균분상환으로 상환기간을 늘리고 보증인의 조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저소득 주민에게 융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 융자대상

- 주민소득지원자금 : 자립가능가구, 소득증대가구, 명품생산가구
- 생활안정자금 : 수급자기준 200% 이하 저소득가구(영세 상행위자금, 전세자금, 학자금 등)

○ 융자조건 : 가구당 2천만원 이하, 연리 3%, 2년 거치 36개월 균등분할 상환

○ 구비서류

- 차주 및 보증인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보증인 : 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 등기부등본

(2)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택전용면적이 85㎡이하이며, 전세금 6,000만원 이하인 자(세자녀 가정은 7,000만원)로 수급자 및 소득이 수급자 기준 200%이하인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다.

○ 융자조건 : 4,200만원이내(세 자녀 가정은 4,900만원 이내), 연리 2~3%,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 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일시상환)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전세자금 융자현황

구 분	인 원	금 액(천원)	비 고
2008년	79세대	1,224,000	
2009년	85세대	1,240,210	
2010년	84세대	917,000	
2011년	44세대	845,650	

4. 사회복지관 운영

가. 부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 추진 배경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시설을 주택가 밀집지역인 망미동 지역에 설치하여 사회복지 업무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포괄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취약 계층의 사회·가정 문제 발생 사전 예방 등에 노력하고 있다.

(2) 역할과 기능

1985년 5월 개관한 부산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표로 설정하며 그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요즈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복지분야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장애인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밖에도 노인교실, 장애우 보호 프로그램, 결손 가정 사회 적응 프로그램, 자활사업, 장애인 가족 상담, 청소년·가정·지역 복지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지역공동체 의식 고취 및 함양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발굴 등 지역사회의 잠재 자원 확보 및 참여 유도 등을 통한 새로운 생활 정보 보급, 지식·교양의 증대, 자립 의욕 고취, 지역사회 소속감 부여 등 사회교육 매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3) 주요사업

○ 가족복지사업

- － 가족관계증진사업 : 건강한 가족교실, 장애 아동 가족 캠프
- － 가족기능보완사업 : 청소년 교육, 저소득 아동 멘토링 프로그램
- － 가족문제해결치료사업 : 보호관찰소 위탁 사회봉사 명령집행, 사회봉사 학생 특별 프로그램, 인지 언어 통합교실, 전문 상담 등
- － 부양가족지원사업 : 장애 아동·청소년 주말복지관, 장애인 부모여행, 장애인 부모 교육 등

○ 지역사회조직사업

- － 복지네트워크구축 : 푸드뱅크, 지역사회조사 등

- 주민복지증진사업 : 지역주민서비스, 가족벼룩시장, 홍보사업 등
- 자원봉사자 양성 및 발굴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자 문화 기행, 자원봉사자 감사의 날, 자원봉사자 교육 및 간담회

○ 교육·문화사업

- 아동 기능교실 : 아동청소년 기능교실, 우리는 UCC VI
- 성인기능교실 : 일본어교실, 영어교실, 스포츠·가요댄스
- 노인여가문화 : 로사대학, 노인 동아리 활동 등
- 문화복지사업 : 지역주민축제, 소리사랑동요대회 등

○ 자활사업 :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지역봉사 위탁 관리 등

(4)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운 영 법 인
부산종합 사회복지관	수영구 망미동 774-269번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016.71㎡	사회복지법인 로사사회봉사회 (대표 구경국)

(5) 운영비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총 사 업 비	지 원 금	자 부 담
2010년	662,032	369,199	292,833
2011년	684,863	386,642	298,221

(6) 사업 실적

[단위 : 연인원, 건수]

구 분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2009년	12개 분야 4,935명	22개 분야 2,293명	14개 분야 22,954명	2개 분야 428명	1개 분야 173명
구 분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지역보호사업
2010년	19개 분야 25,396명	20개 분야 19,998명	20개 분야 23,425명	4개 분야 10,462명	1개 분야 119명
구 분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지역보호사업
2011년	19개 31,072명	20개 18,586명	15개 17,470명	3개 12,032명	1개 108명

나. 부산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1) 재가복지서비스의 정의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세대, 편부모 가정 등 가족 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계층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가사, 간병, 정서, 의료, 결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 사업내용

- 대상자 상담 및 관리 : 신규 이용자 선정, 이용자 현황, 이용자 관리 등
- 결식예방사업 : 경로식당, 거동불편인 식사 배달, 결식 아동 급식 지원, 밑반찬 제공, 김장 김치 지원
- 일상생활지원사업 : 방문 이·미용, 가사 봉사자 연계, 가사 서비스 연계
- 정서지원사업 : 어르신 생신상, 거동불편인 나들이, 저소득 청소년 교복 지원, 아동·청소년 지원서비스, 어린이 날 선물 나누기
- 경제적지원사업 : 결연 연계, 후원금 지급, 긴급 현물 지원, 연계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 장기질환자방문사업, 의료서비스
-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발굴 : 신규 봉사자 관리, 자원봉사자 관리, 후원자 관리 등.

(3) 재가복지대상자 현황

[단위 : 세대]

구 분	계	노 인	장 애 인	아 동	기 타
2010년	631	269	57	120	185
2011년	663	302	84	135	142

(4) 운영비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운 영 비			자원봉사자
	계	지 원 금	자 부 담	
2010년	150,347	71,921	78,426	700
2011년	75,843	74,273	1,570	

(5) 사업실적

[단위 : 연인원, 명]

구 분	대 상 자 관 리				요 보 호 대 상 서 비 스 제 공			
	교 육	대상자 선 정	상 담	간담회	가 사	간 병	정 서	의 료
2010년	219	88	1,468	187	135	-	735	2,090
2011년	-	34	1,109	-	170	-	656	1,990

요 보 호 대 상 서 비 스 제 공				
결 연 후 원	급식서비스	청소년상담	후원자관리	자원봉사자 강화서비스
653	46,185	147	678	7,041
758	47,836	174	410	7,629

다.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 추진배경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시설을 주택가 밀집지역인 광안4동에 설치하여 사회복지 업무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포괄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저소득 취약 계층의 사회·가정 문제 발생 사전 예방 등 복지 체감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2) 역할과 기능

2007년 7월 개관한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표로 설정하며 그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요즈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복지분야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장애인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지역사회 보호사업, 자활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지역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발굴 등 지역사회의 잠재 자원 확보 및 참여 등을 통해 새로운 생활정보 보급, 지식·교양의 증대, 자립 의욕 고취, 지역사회 소속감 부여 등 사회교육 매체 기능을 하고 있다.

(3) 주요사업

○ 가족복지사업

- － 가족관계증진사업 : 가족상담, 부모교육, 심리검사, 법률상담
- － 가족기능보완사업 :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아동 성교육, 멘토링
- － 가족문제해결치료사업 : 가족상담센터, 문제행동치료서비스 등
- － 부양가족지원사업 : 장애아동 부모 교육, 장애아동 야외 나들이

○ 지역사회조직사업

- － 주민 조직 강화 및 교육 : 주민 동아리 운영, 여성 리더쉽 교육, 사회 복지학 교, 실습 지도 등
- － 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 : 외부기관 견학, 유관기관 실무자 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청소년 연수지원제 등
- － 주민복지증진사업 : 지역 조사, 주민편의시설 제공, 홍보사업, 주민 문화축제, 바자회 개최

○ 사회교육·문화사업

- － 사회교육사업 : 유료 사회교육, 무료 사회교육, 노인대학, 컴퓨터교실, 한글교실 등
- － 문화복지사업 : 아동 견학 및 문화체험, 경로관광, 어르신 현장 견학, 어린이 날 행사, 성탄절 행사

○ 자활사업 :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등

(4)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운 영 법 인
홀 트 수 영 종합사회복지관	수영구 광안동 737-10번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081.9㎡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대표 말리홀트)

(5) 운영비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총 사 업 비	지 원 금	자 부 담	비 고
2010년	1,081,921	370,120	711,801	
2011년	1,114,130	387,688	726,442	

(6) 사업실적

[단위 : 연인원, 건수]

구 분	가 족 복지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교육·문화 사 업	자활사업	지역사회 보호사업
2010년	14개 분야 11,627명	30개 분야 29,665명	20개 분야 78,564명	1개 분야 532명	28개 분야 17,437명
2011년	14개 분야 13,423명	36개 분야 32,261명	31개 분야 91,127명	4개 분야 2,322명	24개 분야 20,506명

라.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1) 재가복지서비스의 정의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세대, 편부모 가정 등 가족 기능이 취약한 저소득계층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서, 결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 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 사업내용

- 재가 대상자 선정 관리 : 신규 재가대상자 선정, 재가대상자 상담, 사례회의, 사례회의 슈퍼비전 등
- 급식 서비스 : 밑반찬서비스, 김장 지원 등
- 경제적 지원 : 후원자 개발, 후원자 관리, 결연 후원금 지급, 생필품 지원 등
- 보건의료서비스 : 물리치료서비스, 혈압·혈당 측정 및 환자 관리, 의료 서비스 연계
-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세탁서비스, 이미용서비스, 차량지원서비스 등
- 정서서비스 : 명절맞이 사랑나누기, 독거 어르신 생신잔치, 장수 사진 제작 등

(3) 재가복지대상자 현황

[단위 : 세대]

구 분	계	노 인	장 애 인	아 동	기 타
2010년	679	475	26	53	125
2011년	784	548	27	54	155

(4) 운영비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운 영 비			자원봉사자
	계	지 원 금	자 부 담	
2010년	133,076	72,970	60,106	589
2011년	161,837	75,430	86,407	436

(5) 사업실적

[단위 : 연인원/명]

구 분	대 상 자 관 리				요 보 호 대 상 서 비 스 제 공			
	교 육	대상자 선 정	상 담	간담회	가 사	간 병	정 서	의 료
2010년	-	68	1,416	-	649	-	8,398	2,353
2011년	-	50	1,208	-	1,729	-	9,600	984

요 보 호 대 상 서 비 스 제 공					
구분	결연후원	급식서비스	청소년상담	후원자관리	자원봉사자 강화서비스
2010년	387	2,268	165	1,624	3,645
2011년	500	2,381	135	5,969	4,166

5. 의료급여

가. 의 의

의료급여제도는 헌법 제34조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상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2001. 5. 24. 舊의료보호법이 폐지되고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나. 대상자 선정

(1)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구성원

- 행려환자
-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6급 의사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가족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
-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

(2)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

[2011. 12. 31. 기준]

[단위 : 명]

총계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소계	기초 수급 자	시설 수용 자	국가 유공 자	북한 이탈 주민	중요 무형 문화재	광주민 주화	의사 상자	국내 입양 아동	행려 환자	
5,663	3,742	3,229	105	384	2	3	0	0	13	6	1,921

다. 의료급여의 범위 및 방법

(1) 의료급여 범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든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진찰·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 분만, 이송 기타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등의 의료급여를 받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 의료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질병·부상치료 목적이 아니거나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 단순한 피로 권태
- 마약중독증,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증
- 예방접종, 건강진단, 각종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 초음파검사에 의한 촬영 및 관독
- 수급권자가 희망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의 상급 병실료 차액

(2) 의료급여 방법

- 급여비용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의원·약국 이용 시 급여비용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며
급여비용의 부담비율은 다음과 같다.

수급권자 진료시 본인부담금

구 분	외 래(1차)	입 원(2차)	비 고
1 종	1차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 약국 500원	없음	건강생활유지비 월 6,000원 지원
2 종	가.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 진료 ▷ 제1차,2차 진료기관 만성질환자 진료 - 방문당 1,000원 본인부담 단, 의사가 직접조제 및 처방전을 교부하 지 않은 진료일 경우는 방문당 1,500원 본 인부담 ▷ 제1차, 제2차, 제3차기관 진료 - 기금부담 85%, 본인부담 15% 나. 보건소, 보건진료소 진료, 동기관 처방전 약국 조제 - 전액 기금 부담 다.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 처방전 약국 조제 - 방문당 500원 본인 부담 ▷ 처방전 없이 직접 조제 : 방문당 900원 본인 부담	본인 부담 10%	

라. 의료급여 비용의 대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에 대한 현금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써 2종 수급권자 입원 시 진료비용 총액 중 본인부담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보장기관에 신청을 하면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 10만원미만은 3회
- 10만원~30만원미만은 8회

- 30만원이상은 12회 분할납부
-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회수 조정 가능

마. 급여기간

- 각 상병별 365일로 제한하되,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 연장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급여기간 초과시 구청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연장승인 후 진료)
- 연장승인 없이 상한일수 365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비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바. 의료급여기금 운용

의료 급여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급여기금은 국고보조금 80%, 市부담금 20%,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사. 2012년 계획

2012년도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및 상담을 밀착 제공하여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며,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건강관리 위해요인을 줄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수급권자가 필요로 하는 복지·보건·의료자원의 연계시키는 등 수급권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6.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가. 의의 및 특성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2007년 8월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바우처를 직접 지원, 원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방식으로 탈바꿈한 차별화된 접근 방식의 사업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나. 사업 내용

(1) 지역선택형 바우처 사업

서비스 수요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거나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 등 전국단위 공급 필요성이 높은 보건복지부가 직접 사업을 발굴·제시하고 지자체가 선택하는 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이 있다.

(2)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

지역특성·주민 수요 등을 감안, 지자체가 발굴·기획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개발한 광역개발형 사업과 구에서 개발한 기초개발형 사업으로 나누어지며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광역개발형 사업

1.3세대 통합교육프로그램 「세대 공감 Old & New」,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향상과 가족 문제 예방을 위한 EAP 프로그램과, 급성기 심혈관 질환 치료 후 집중관리서비스, 해양역 사문화체험(송상현 장군의 업적을 찾아서), 맞춤형 재활보조기구 렌탈서비스,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자녀의 성공을 돕는 학부모 코칭(키울 Mom 난다!), 아동발달지원서비스, 아동발달검사서비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Art - Therapy를 활용한 지역 아동 E-Q증진서비스, 성장기아동 정서발달지원서비스, 장애 아동·청소년 홈터칭 사업, 찾아가는 맞춤형 치매 예방교실, 나홀로 아동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등 15개 사업을 운영 하였다.

○ 기초개발형 사업

구에서 지역주민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집중 개발, 2008년도부터 추진하던 인지 및 언어기능향상을 위한 조기개입서비스 사업을 2009년도부터 문제아동조기개입서비스 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뇌활성화 및 창의력 향상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증대로 우리구 자체 사업으로 마인드맵을 통해 아동들의 전반적인 사고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2009년도부터 창의·사고력계발 자기주도 강화학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시각 장애인 안마서비스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 받아 추진하고 있다.

다. 대상자 선정 절차

구 분	주 체	내 용
신청 및 접수 (동주민센터)	본인·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공무원	○ 신청서 ○ 제출서류(소득확인서류 등)
↓		
상 담 (동주민센터))	동 담당자	○ 신청가구의 여건, 대상자 선정 요 건 부합여부 등 확인
↓		
소득 조사 (동주민센터)	동 담당자	○ 건강보험료 등
↓		
욕구 판정 (동주민센터)/제공기관)	동/제공기관 담당자	○ 신청자의 건강상태 등 욕구 판정 - 서비스 제공기관이 대행 가능
↓		
대상자 선정 (구)	구 담당자	○ 관리센터에 선정결과 전송
↓		
통 지 (구)	구 담당자	○ 신청자에 선정결과 통지

라. 신 청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동 주민센터

마. 사업추진실적

[단위 : 연인원, 명, 천원]

구 분	사업기간	총계		지역선택형		지역개발형			
						광역개발형		기초개발형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2009	2009.2.1~ 2010.1.31	10,672	353,14	9,803	231,413	225	33,976	644	87,758
2010	2010.2.1~ 2011.1.31	10,305	622,320	7,197	163,215	661	126,245	2,447	332,860
2011	2011.2.1~ 2012.1.31	11,689	815,414	6,988	157,952	1,453	208,088	3,248	449,374